4대천왕 특강 보충자료 2

(배임죄)

<기본서 각론 364쪽>

4. 이중 저당권 등기

판례

① (이중 저당권 등기 ⇒ 배임죄 X) [1]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 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
[2]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,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(대판 2020.6.18, 2019도14340 전원합의체)

8.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

판례

① [1]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,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. [2]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(대판 2020.6.4, 2015도6057) [20 법행]

<민사용어>

① 저당권 / 근저당권 : 부동산에 담보 설정하는 것

질권 : 동산, 권리(채권)에 담보 설정하는 것 예) 전당포, 통장에 담보잡는 것

권리질권: 권리(채권)에 담보(질권) 설정하는 것

② 양도담보 :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일시 양도하는 것

① 채무자 변제 O ⇒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함

변제 X ⇒ 확정적으로 채권자 소유

③ 점유개정 : 점유는 변함이 없으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